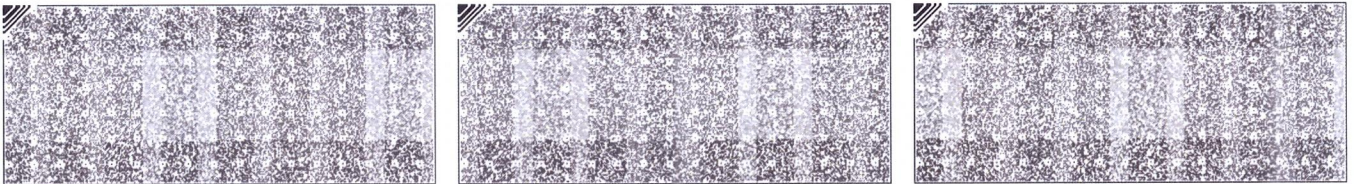




<b>발급 번호</b> 3219-105-1570-935		<b>납세증명서</b>			<b>처리기간</b> 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
<b>납세자</b>	<b>상호(법인명)</b> 한국의류산업협회				<b>사업자 등록번호</b> 120-82-02481	
	<b>성명(대표자)</b> 최병오	<b>주민등록번호</b> 				
	<b>주소(본점)</b>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(대치동)					
<b>증명서 의 사용 목적</b>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금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<input type="radio"/> 이주번호 <input type="radio"/> 이주확인일		제      호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
<b>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(단위 : 원)</b>						
유예종류	유예기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	해	당	없	음		
<p>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>1. 증명서 유효기간 : 2017년 07월 27일          2.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1항 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 )</p>						
<b>접수번호</b>	100163086799	2017년 6월 27일 <b>삼성세무서장</b> (인)				
<b>담당부서</b>	민원봉사실					
<b>담당자</b>	함연의					
<b>연락처</b>	02-3011-7224					



\* 본 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진위확인이 가능하며,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도 문서발급번호로 90일간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